

예 산 총 칙

2012년도 본예산

제 1 조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276,046,519	8,281,396
일반회계	261,274,233	7,838,227
특별회계	14,772,286	443,169
기타특별회계	14,772,286	443,169
상수도사업특별회계	3,746,297	112,389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645	19
의료급여특별회계	1,081,437	32,443
기초생활보장기금특별회계	609,880	18,296
주택사업특별회계	113,904	3,417
농공단지조성특별회계	1,952,800	58,584
농어민소득증대사업특별회계	2,849,892	85,497
간척농지개발사업특별회계	263,000	7,890
장흥담관련지역발전기금특별회계	2,817,712	84,531
장흥군수질개선특별회계	1,336,719	40,102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제 4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 5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5,240,582천원으로 한다.

제 6 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11,400,000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재무활동 경비,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 등은 상호 이용할 수 있다.